



조합업무 문고 답하기



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

❗ 기계대여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지?

☞ 건설기계 사용요청 시 대여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가 없는 대여건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❗ 일대 계약 시 대여횟수 미정의 이유로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증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?

☞ 건산법의 보증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해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주 00회 또는 월 00회 또는 사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보증서 발급 후 대여횟수 및 금액이 증가된 경우 증액된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❗ 일대 계약인 경우도 보증서 발급 대상인지?

☞ 일대 계약도 보증서 발급 대상입니다. 단 당일 사용, 당일 대금결제인 경우는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❗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이 보증 대상인지?

☞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, 1건 계약금액(부가세포함)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,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❗ 보증서 면제대상의 공사도중 대여금액 증액이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?

☞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증액되는 시점에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.

❗ 원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할 경우 보증 면제대상인지?

☞ 원도급자 직불은 보증 면제대상이 아닙니다.

☞ 보증서 미제출 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?

☞ 영업정지처분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 별표6).

☞ 포괄대금지급보증,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?

☞ 포괄대금지급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. 참고로 건설법 제6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☞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?

☞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(27종)를 말하며, 유사장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(예: 화물차).
※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

☞ 보증이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?

☞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등록된 대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 단,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(연명등록자)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러한 경우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'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'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상의 '상호 및 주소'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 등록자로 볼 수 있습니다.

☞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는?

☞ 건설공사의 (하)도급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(하)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☞ 건설기계가 (가)압류 상태인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?

☞ 기계 대여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, 압류 관련으로 기계사용문제 발생 시 채권자(기계대여업자)의 귀책사유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공제업무

❗ 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재보험 가입가능 여부?

☞ 반드시 산재를 가입한 업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근재상품의 보상범위가 산재를 초과하는 보상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사고처리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❗ 근재가입 시 1인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가입했는데 사고 시 1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
☞ 1억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. 1억원은 보상한도이므로 사고로 인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,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❗ 현장직만 근재를 가입한 경우 내근직 사원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여부는?

☞ 내근직 사원에 대하여 별도로 근재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. 내근직 사원에 대한 공제요율은 현장직 대비 20%대에 불과하므로, 내근직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조합원께서는 연간계약 가입을 권유드립니다.

❗ 원수급인이 여러개인 경우 어느 회사를 원수급인으로 하나요?

☞ 각각의 도급비율을 확인한 후 도급비율이 큰 업체를 원수급인으로 입력합니다. 필요 시 추가기재사항란에 나머지 공동수급인 입력도 가능합니다.

❗ 공사장별 계약인 경우, 세부 공사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?

☞ 확인되는 부분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. 개성공단의 경우는 당연히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는 조합원 본사 주소를 등록해 주시고, 추가기재사항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

❗ 영업배상책임공제에서 “자기부담금”이란 무엇인가요?

☞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금액을 말하며,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게 됩니다.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빈번한 작은 손해 사고

에 대해서 재해조사나 이재처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 보험계약자에게는 자기부담금액 설정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함입니다.

※ 보험금 = 손해액(배상책임액) - 자기부담금액

기타업무

❏ 거래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?

☞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으로 거래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지점에 업무이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→ 온라인지점 → 영업정보서비스 → 업무이관신청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, 지점방문 시에는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'업무이관신청서'를 다운받아 작성,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❏ 회사 주소지 변경 시 조합에서 처리할 사항은?

☞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의 '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'를 다운하셔서 변경 전, 변경 후 사항을 기재하시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점에 제출(FAX 가능)하시면 변경 처리해 드립니다. 또는 조합 온라인지점 → 영업정보서비스 → 출자주명부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

❏ 출자좌수증명원, 금융거래확인서, 용자금잔액증명원 등 민원서류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?

☞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 좌측부분에 결산증빙서류출력을 클릭하시면 결산서류출력화면이 열립니다. 기준일 및 해당 민원서류를 체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또한,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→ 온라인지점 → 인터넷민원서류발급에서 각 증명원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❏ 조합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조치 방법은?

☞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는 조합원번호 5자리이고(예 : 01234) 관할 지점에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비밀번호 분실 시에는 조합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 📧